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3

제출년월일 : 1993. 10. .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동일 자치내의 국·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분이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상이하여 이를 통일함.
- 건물점유토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고 매매, 대부, 교환시 조례, 규칙 규정내용과 서식내용이 상충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하여 30일 연장 (안 제26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 (안 제39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대부료의 납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 예산상황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경기 회계 13330 - 1362 ('93. 8. 7) 호로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준칙(안)시달

700 113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 한다.

제22조 제3호 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 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사.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30일 이내"를 각각 "60일 이내"로 한다.

제39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m² 이하, 기타지역

에서는 $2,000m^2$ 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m^2$ 또는 $2,000m^2$ 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① ----- ----- -----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p>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p>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10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 (생 략)</p> <p>3. 영 제9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10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제2항 ----- ----- ----- ----- -----</p> <p>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실(2층이하 건물의 지하실 포함)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마.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신 설)	3분의 1
	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신 설)	4분의 1
	사. 지하 3층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시유재산의 대부 료는 당해 년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 내에 납입하게 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체결연도의 대부료는 계약체 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 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2. -----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 -----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중 략)

1 - 2. (생 략)

(신 설)

----- 60일 -----

----- 60일 -----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중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m² 이하, 기타 지역

에서는 2,000m² 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

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

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

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 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

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

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

이 본호의 1,000m² 또는 2,000m² 를 초과

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